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전체 버전)

주: 본 예시 양식과 내용은 참고용임

제 목: xxxx 에센스 안전성 평가 보고서

허가인/등록인 명칭: xxxxxx

허가인/등록인 주소: xxxxxxx

평가 기관: xxxxxxx

평 가 자: xxxxx

평 가 일: xxxx 년 xx 월 xx 일

목차

1. 개요 3

2. 제품 소개 3

3. 제품 처방 3

4. 처방 중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6

5.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9

6.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10

7. 안전성 평가 결론 10

8.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 11

9. 안전성 평가자 약력 12

10. 참고문헌 12

11. 부록 13

1. **개요**

xxxx 에센스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으로 얼굴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매일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2021년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품의 미생물과 유해물질 등을 측정하고 처방에 사용된 물, 부틸렌 글라이콜, 1,2-헥산다이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알란토인, 글리세린, 만니톨, 아르기닌, CI 42090, 베타글루칸 등 xxx종 성분과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등 xx 종 위험물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용 상황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1. **제품 소개**
2. 제품 명칭: xxxx 에센스
3. 제품 사용 방법: 세안 후 적절한 양을 덜어내어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흡수될 때까지 가볍게 두드린다.
4. 사용 대상: 일반인
5. 일평균 사용량(g/day): 1.54\*
6. 제품 체류인자: 1.0
7. 전신 노출량(SED) = 일평균 사용량 × 체류인자 × 처방 중 성분의 함량 비율 × 경피 흡수율 ÷ 체중#

주: \*일평균 사용량은 크림 용량을 참고하였으며 데이터 출처는 “The SCCS'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Substances and Their Safety Evaluation-12th Revision”이다.

# 체중은 일반적으로 성인 체중(60kg) 기준이며, 경피 흡수율은 100%로 계산한다.

1. **제품 처방**

본 처방에 사용된 성분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또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 이미 수록되었다. 제품 처방표는 표1을 참조하고 제품 실제 성분 함량표는 표2를 참조한다.

**표1 제품 처방표**

| **순번** | **중문명칭** | **INCI명칭/영문명칭** | **사용목적** | **“기사용 원료 목록”중의 순번** | **비고** |
| --- | --- | --- | --- | --- | --- |
| 1 | 물 | WATER | 용매 | 06260 |  |
| 2 | 부틸렌 글라이콜 | BUTYLENE GLYCOL | 보습제 | 01946 |  |
| 3 | 물 | WATER | 피부 컨디셔너 | 06260 |  |
| 글리세린 | GLYCERIN | 02421 |  |
| 1,2-헥산다이올 | 1,2-HEXANEDIOL | 00004 |  |
| 4 | 알란토인 | ALLANTOIN | 피부 컨디셔너 | 04823 |  |
| 5 | 1,2-헥산다이올 | 1,2-HEXANEDIOL |  | 00004 |  |
| 6 |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 HYDROXYACETOPHENONE | 항산화제 | 02021 |  |
| 7 | 베타글루칸 | BETA-GLUCAN | 피부 컨디셔너 | 01010 |  |
| 물 | WATER | 06260 |  |
| 만니톨 | MANNITOL | 02412 |  |
| 8 | 아르기닌 | ARGININE | pH조절제 | 03519 |  |
| 9 | CI 42090 | CI 42090 | 착색제 | 00295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 가능한 착색제(표6) 순번62 |

**표2 제품 실제 성분 함량표**

| **표준 중문 명칭** | **INCI명** | **실제 성분 함량(%)** |
| --- | --- | --- |
| 물 | WATER | xxx |
| 부틸렌 글라이콜 | BUTYLENE GLYCOL | xxx |
| 1,2-헥산다이올 | 1,2-HEXANEDIOL | xxx |
|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 HYDROXYACETOPHENONE | xxx |
| 알란토인 | ALLANTOIN | xxx |
| 글리세린 | GLYCERIN | xxx |
| 만니톨 | MANNITOL | xxx |
| 아르기닌 | ARGININE | xxx |
| CI 42090 | CI 42090 | xxx |
| 베타글루칸 | BETA-GLUCAN | xxx |

1. **처방 중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표3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  |  |  |  |  |
| --- | --- | --- | --- | --- |
| **순번** | **중문명칭** | **함량(%)** | **평가 결과** | **참고문헌** |
| 1 | 물 | xxx | 본 제품에 사용된 물은 화장품 생산용수 요건에 부합하여 안전성 위험이 없다. |  |
| 2 | 부틸렌 글라이콜 | xxx | 2006년 미국 화장품 원료검토위원회(CIR)가 부틸렌 글라이콜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얼굴과 목에 사용하는 스킨 케어 제품(Face and neck skin care)에서의 사용 농도는 3%-7%이다. 본 제품에서 부틸렌 글라이콜의 총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Annual Review of Cosmetic Ingredient Safety Assessment - 2004/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06, 25(Suppl. 2): 1-89 |
| 3 | 1,2-헥산다이올 | xxx | 2012년 CIR은 1,2-헥산다이올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2%-10%, 피부 접촉(Dermal contact)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5%-10%이다. 본 제품에서 1,2-헥산다이올의 총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1,2-Glycol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2, 31(Suppl. 2): 147-168 |
| 4 |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 xxx | 2022년 CIR은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2%-5%, 피부 접촉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99%-5%이다. 본 제품에서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의 총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Hydroxyacetophenone as Used in Cosmetics. Final Report 09/2022 Available from CIR |
| 5 | 알란토인 | xxx | 2010년 CIR이 알란토인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얼굴과 목에 사용하는 페이셜 크림, 로션, 파우더, 스프레이 제품(Face and neck creams, lotions, powders, and sprays)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2%-0.4%이다. 본 제품에서 알란토인의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Final Report of the Safety Assessment of Allantoin and Its Related Complex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0, 29(Suppl. 2): 84-97 |
| 6 | 글리세린 | xxx | 2019년 CIR이 글리세린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1%-79.2%, 피부 접촉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3%-99.4%이다. 본 제품에서 글리세린의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Glycerin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9, 38(Suppl. 3): 6-22 |
| 7 | 만니톨 | xxx | 2019년 CIR이 만니톨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63%-60.5%, 피부 접촉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63%-60.5%이다. 본 제품에서 만니톨의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Mannitol, Sorbitol, and Xylitol as Used in Cosmetics. Final Report 12/2019 Available from CIR |
| 8 | 아르기닌 | xxx | 2013년 CIR이 아르기닌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2%-2%, 피부 접촉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2%-18%이다. 본 제품에서 아르기닌의 총 첨가량은 x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α-Amino Acid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3, 32(Suppl. 4): 41-64 |
| 9 | CI 42090 | xxx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표6 화장품 사용 가능한 착색제 규정에 따르면 각종 화장품에 CI 42090 사용이 허용된다. 해당 원료의 첨가량은 xxx%로 본 제품에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 2015년 제268호 |
| 10 | 베타글루칸 | xxx | 2016년 CIR이 베타글루칸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해당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2%-0.1%, 피부 접촉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2%-0.1%이다. 본 제품에서 베타글루칸의 첨가량은 xxx%로 적용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Safety Assessment of Microbial Polysaccharide Gum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6, 35(Suppl. 1): 5-49 |

1.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본 제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과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의 요건에 따라 현재 과학 인지 수준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투입, 생산 과정 중 발생하거나 유입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제품의 생산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며, 생산 과정과 제품 포장 재료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한다.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 물질은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고, 원료가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불순물이다. 잔류한 미량의 불순물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품 안전성 위험물질 위해 식별표는 표3을 참조한다.

**표4 화장품 중 안전성 위험 물질 위해 식별표**

| **표준 중문 명칭** | **함유할 수 있는 위험물질** | **비고** |
| --- | --- | --- |
| 물 | 없음 | / |
| 부틸렌 글라이콜 | 없음 | / |
| 1,2-헥산다이올 | 없음 | / |
|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 페놀 | 일본 화장품 표준[17]에서 사용이 허용된 방부제 중，페놀의 화장품에서 한도는 0.1g/100g(1000ppm) 이다. 본 처방에서 5번 원료(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의 위험물질 페놀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 위험이 없고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측정 보고서는 부록3을 참조한다. |
| 알란토인 | 없음 | / |
| 글리세린 |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의 불순물에 관한 의견[18]에 의하면 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에 존재해도 안전하다. 본 처방에서 3번 원료(글리세린 포함)의 위험물질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의 함량은 0.003% 미만으로 안전성 위험이 없어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부록3을 참조한다. |
| 만니톨 | 없음 | / |
| 아르기닌 | 없음 | / |
| CI 42090 | 2-,3-와 4-포르밀벤젠설폰산, 3-(에틸(4-설포페닐)아미노)메틸벤젠설폰산, 류코 염기와 언설포네이티드 방향족 일차 아민 | 원료 공급사가 제공한 품질 규격 증명서에 따르면 13번 원료는 식품첨가제 국제표준에 열거된 순도 요건에 부합하는 착색제다. 화장품에 적용 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위험물질)은 안전성 위험을 지니지 않으며 부록1을 참조한다. |
| 베타글루칸 | 없음 | / |

그 밖에, 해당 제품의 검사 보고서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검사 결과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한도”의 한도값 요건에 부합함을 나타낸다.

1.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본 제품은 페이스 에센스로 얼굴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매일 사용할 수 있다.

안전 경고문과 관련된 강제성 요구는 없으며 기업은 제품 실제 상황에 따라 포장과 라벨에 경고문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안전성 평가 결론**

본 제품은 페이스 에센스(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으로 얼굴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매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노출 방식은 경피 흡수로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본 제품의 노출 평가 방식은 경피 경로를 고려한다.

제품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1.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성분은 본 제품 농도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2.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물질 측정 및 평가 결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미생물 검사 결과, 해당 제품 미생물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
4. 유해물질 측정 결과, 해당 제품 유해물질 함량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
5. 처방 중 각 성분 사이에서 유해한 상호작용의 발생이 예측되지 않았다.
6. 제품 방부 효능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부록을 참조한다.
7. 제품의 안정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부록을 참조한다.
8. 제품의 포장 호환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부록을 참조한다.

요약하면, 화장품 중 각 원료와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화장품 미생물과 유해물질의 측정 결과, 안전성 시험 평가 결과 및 제정한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등과 종합하여 명확한 제품 안전성 평가 결론을 도출하였고 제품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는 현재 인지 수준을 바탕으로, 기존 과학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객관성, 진실성, 정확성을 서약하고, 과학성, 추적성 요건을 충족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에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견되거나 출시 후 부작용 모니터링 데이터가 발생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 또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허가인, 등록인은 적절한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한다.

1. **안정성 평가자의 서명**

평가자:

날짜:

주소:

1. **안전성 평가자 약력**

|  |  |  |  |
| --- | --- | --- | --- |
| 성명 |  | 성별 |  |
| 학위 |  | 전공 |  |
| 기관 |  | | |
| 개인약력 |  | | |
| 종사업무약력 |  | | |
| 교육 이력 |  | | |

1. **참고문헌**
2.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 2015년 제268호
3. 국가 식품 약품 감독관리총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2021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 2021년 제62호
4. 중국 식품약품 검정연구원, 중검원 “국제권위 화장품안전성 평가데이터 색인”과 “기출시 제품 원료사용정보” 발표에 관한 통지, 발표일: 2024년 4월 30일
5. Annual Review of Cosmetic Ingredient Safety Assessment - 2004/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06, 25(Suppl. 2): 1-89
6. Safety Assessment of 1,2-Glycol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2, 31(Suppl. 2): 147-168
7. Safety Assessment of Hydroxyacetophenone as Used in Cosmetics. Final Report 09/2022 Available from CIR
8. Final Report of the Safety Assessment of Allantoin and Its Related Complex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0, 29(Suppl. 2): 84-97
9. Safety Assessment of Glycerin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9, 38(Suppl. 3): 6-22
10. Safety Assessment of Mannitol, Sorbitol, and Xylitol as Used in Cosmetics. Final Report 12/2019 Available from CIR
11. Safety Assessment of α-Amino Acid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3, 32(Suppl. 4): 41-64
12. Safety Assessment of Microbial Polysaccharide Gum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6, 35(Suppl. 1): 5-49
13. EDTA and Sal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23, 42(Suppl. 3): 32-36
14. Safety Assessment of Monosaccharides, Disaccharides, and Related Ingredient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9, 38(Suppl. 1): 5-38
15. Safety Assessment of Alkyl PEG/PPG Ether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6, 35(Suppl. 1): 60-89
16. Safety Assessment of Alkyl Glyceryl Ethers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3, 32(Suppl. 3): 5-21
17. Safety Assessment of Tripeptide-1, Hexapeptide-12, Their Metal Salts and Fatty Acyl Derivatives, and Palmitoyl Tetrapeptide-7 as Used in Cosm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18, 37(Suppl. 3): 90-102
18. 일본 화장품 표준, 일본후생노동성 고시 제331호(2000년 9월)
19. 유럽 의회와 이사회 법규(EC) No.1223/2009
20. **부록**
21. 원료 공급사가 제공한 원료의 품질 규격 증명서
22. 위험물질 다이에틸렌 글라이콜과 페놀의 평가 근거
23. 제품의 미생물, 유해물질의 측정 보고서(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 xxxxxx 참조), xx호 원료 페놀의 측정 보고서, xx번 원료 페놀의 측정 보고서, xx번 원료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의 측정 보고서
24. 제품 방부 효능 평가 또는 시험 결과
25. 제품의 안정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
26. 제품의 포장 호환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

부록4

**화장품 방부 효능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에센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 관련 연구(구체적인 참고문헌 명칭과 번호: xxxxxx)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의 방부 효능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통해 표준작업절차(SOP) 수립(자체 방법 명칭과 번호: xxxxxx)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균주, 중화제,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 화장품 방부 효능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품 특성, 제품 처방 및 제품 포장 등과 종합하여 연구와 판단을 했다. 기존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본 제품의 방부 효능은 양호하며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미생물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다.

☐ 제품 특성, 제품 처방 및 제품 포장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연구와 판단을 한 결과,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본제품은 미생물 위험이 낮은 제품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미생물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으므로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1. **서약**

당사는 본 제품의 방부 유효성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

부록5

**화장품 안전성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에센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 관련 연구(기업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참고 문헌 명칭과 번호)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의 안정성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거쳐 표준을 이미 수립한 작업 규정(기업이 내부 표준작업절차(SOP) 명칭과 번호 제공)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방법, 시험 관찰 사항,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화장품 안정성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품 특성과 제품 처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판단을 종합한 결과, 기존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저장 조건에서 본 제품의 안정성은 XX개월까지 도달할 수 있다.
3. **서약**

당사는 본 성명서에 포함된 안전성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

부록6

**화장품 포장재 호환성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에센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을 근거로 실시한 관련 연구(구체적인 참고 문헌 명칭과 번호: xxxxxx)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과 포장재 호환성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거쳐 이미 수립한 표준작업절차(SOP)(자체 방법 명칭과 번호: xxxxxx)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방법, 시험 관찰 사항,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기존 제품 포장재의 호환성 데이터를 기존의 지식 수준을 토대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평가한 결과, 이 제품과 포장재 간의 직접 접촉하는 호환성 위험은 통제 가능하며,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다.
3. **서약**

당사는 본 성명서에 포함된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